

유휴·저활용장비 상시이전 지원 공고

‘2016년 유휴·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’ 계획에 따른 연구장비 상시이전 지원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6년 5월 30일
미래창조과학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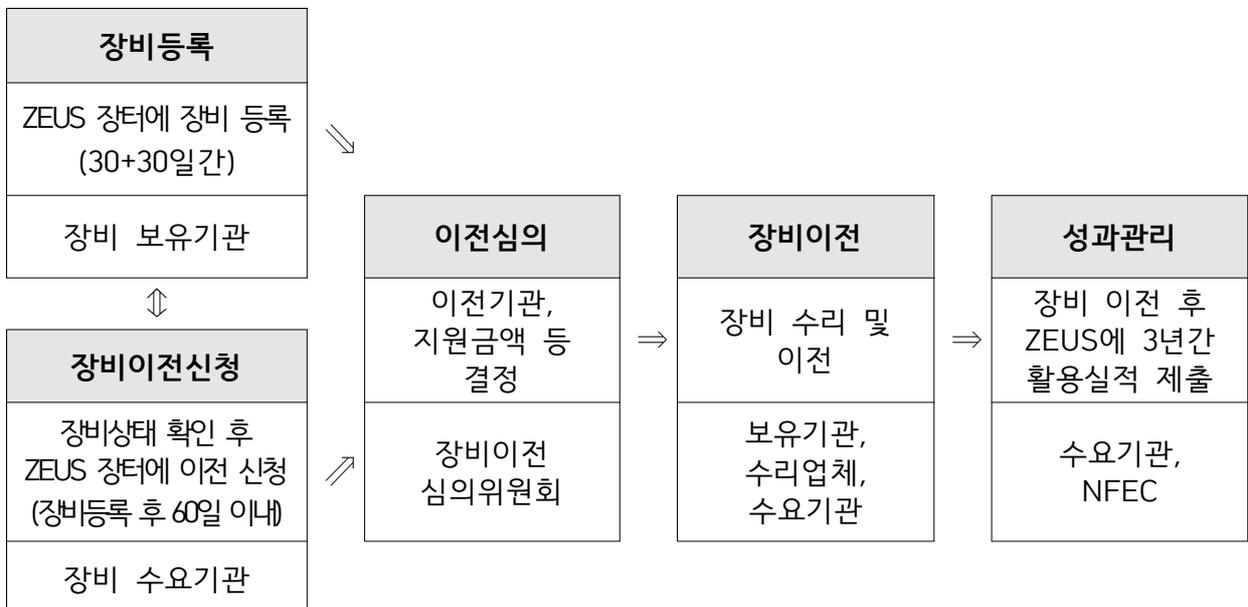
□ 사업목적

- 유휴·저활용장비의 처분을 원하는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장비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·장비 활용도 및 R&D 투자 효율화 제고
- ※ 산업통상자원부의 「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」은 본 사업과 통합운영

□ 지원내용

- 지원규모 : 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경비
 - ※ 장비 당 취득가의 10% 이내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(예산범위 내 지원)
- 지원항목
 - (장비이전비) 장비의 이전·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
 - (장비수리비)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(소모품비 제외)
 - (장비교육비)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·훈련비
- ※ 장비수리비 및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이며, 필수적인 부품비용은 수리비에 포함 가능

□ 추진절차



2. 장비 등록

□ 대상장비

-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·저활용 장비 일체
 - ※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장비 중 '15.12.31(기준)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포함하되,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는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

□ 등록방법

- 타 기관으로의 이전이 가능한 유휴·저활용 장비에 대해 '이전지원사업 신청서' 작성 후, ZEUS 장비활용서비스 온라인 중고장터(www.zeus.go.kr/end)에 등록
 - ※ 보유기관은 관계 법·규정에 따라 신청 전에 무상양여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

3. 장비 이전신청

□ 신청자격

-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국가보훈단체, 그 밖의 비영리단체
 - 중소기업*도 조건부** 지원 가능
 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 - ** 동일 장비에 비영리기관의 신청이 없고, 원 보유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임대의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며, 수익자 부담원칙 및 국가자산 보호를 위해 수리비만 지원
-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□ 신청요령

- 장비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
 - 제출서류는 ZEUS 장비종합포털 온라인 중고장터(www.zeus.go.kr/end)에 등록

4. 참고사항

□ 참고사항

- 장비 등록 후 30일 내에 장비이전신청이 있을 경우 이전심의에 바로 상정되며, 신청이 없는 경우 30일간 추가 공고 후 장비처분 가능
-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, 장비이전심의 시 장비당 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
- 일제정비기간 이전에 ZEUS 중고장터에 장비를 등록한 경우, 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장비이전 지원
- 장비 신청기관은 이전 후 3년간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

-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또는 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」에 따름

□ 문의처

-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 (042-865-3962, market@nfec.go.kr)

5. 관련법령 및 규정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
- 「물품관리법」과 「국유재산법」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의 규정
-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 “제8절 처분”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(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)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(장비 관리)

[참고] 장비이전심의위원회 평가지표 (안)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								
연구개발 활동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 및 경력 (논문, 저서, 특허, 수행연구과제 등) · 신청자의 신진연구자 해당 여부 · 신청기관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· 기존 보유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	15								
설치기관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인력 보유 ·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·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	15								
이전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비 상태 및 이력확인 여부 및 충실성 ·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	30								
활용계획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비 활용 건수 및 활용실적(논문, 특허, 기술이전, 교육) 계획의 우수성 ·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	20								
공동활용 계획의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동활용 여부 (단독/공동활용허용/공동활용서비스) ·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여부 ·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 (활용건수) 	20								
가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6년 장비등록 성과 (이전심의 시점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기관의 신청장비 대비 등록장비 비율</td> <td>가산점</td> </tr> <tr> <td>2배 이상</td> <td>5점</td> </tr> <tr> <td>1배 초과 ~ 2배미만</td> <td>3점</td> </tr> <tr> <td>1배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기관의 신청장비 대비 등록장비 비율	가산점	2배 이상	5점	1배 초과 ~ 2배미만	3점	1배	1점	(+5)
기관의 신청장비 대비 등록장비 비율	가산점									
2배 이상	5점									
1배 초과 ~ 2배미만	3점									
1배	1점									
합 계		100 (+5)								

- [붙임] 1. 이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.
 2. 장비이전요청서 양식 1부.
 3. 장비활용계획서 양식 1부. 끝.